

第256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4 號

國會事務處

2005年12月1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1.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2. 범죄피해자보호법안
3. 檢事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4.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5.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향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
7.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11.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12. 環境親和의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19.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4.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
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2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27.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3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5.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 3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7.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8.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附議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주승용 · 이시중 · 양형일 · 이정일 · 이은영 · 이상열 · 우제항 · 안병엽 · 김선미 · 양승조 · 정성호 의원 발의)	3
2. 범죄피해자보호법안(정부 제출)	3
3. 檢事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4.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5.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5
6. 향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
7.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0
8.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우제창 · 채수찬 · 지병문 · 김종률 · 김혁규 · 정갑윤 · 김태홍 · 이시중 · 이계안 · 이목희 · 김재홍 · 한병도 · 최인기 · 김명주 · 서혜석 의원 발의)	10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 · 최철국 · 강기정 · 최규성 · 최인기 · 유선호 · 이정일 · 우윤근 · 원혜영 · 제종길 · 지병문 · 김태년 · 염동연 · 유승희 · 문학진 · 주승용 · 박상돈 · 김동철 · 김교홍 · 배기선 · 양형일 · 김영주 · 박순자 · 김덕규 · 김희선 의원 발의)	10
1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 · 김혁규 · 우제항 · 김명주 · 엄호성 · 김태홍 · 박승환 · 박상돈 · 김양수 · 이영호 · 고조홍 · 최인기 · 심재엽 · 김재원 · 최규성 · 이원영 · 채수찬 · 김종률 · 이시중 · 신학용 · 김영춘 · 심재철 · 박재완 · 이목희 · 노현송 · 신기남 · 이혜훈 · 이근식 · 임종석 · 이광철 · 이상경 · 김성곤 의원 발의)	10
11.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2.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2
1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 · 홍미영 · 강혜숙 · 강창일 · 최규성 · 한병도 · 최철국 · 이원영 · 정성호 · 원혜영 · 염동연 · 김동철 · 서갑원 · 양형일 · 지병문 · 오영식 · 박기춘 · 김교홍 · 강기정 · 김태년 · 김덕규 · 김희선 의원 발의)	12
14.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안상수 · 최인기 · 박승환 · 윤건영 · 서병수 · 김재경 · 정두언 · 박진 · 박찬숙 · 최경환 · 오제세 · 박종근 · 박재완 의원 발의)	12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4
1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 · 노영민 · 김정훈 · 김종률 · 채수찬 · 최인기 · 최규성 · 김양수 · 김명주 · 이시중 · 이목희 · 이계안 · 김재원 · 정갑윤 · 이해봉 · 박승환 · 김석준 의원 발의)	14
18.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 · 이해봉 · 심재철 · 황우여 · 엄호성 · 김영춘 · 정성호 · 김재홍 · 이근식 · 이시중 · 박재완 · 안상수 의원 발의)	14
19.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5

21.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5
22.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명주·김영춘·김태년·김태홍·노현송·박재완·서재관·서병수·신계륜·신학용·심재덕·심재철·엄호성·우제창·이상경·이시중·이원영·이해봉·조경태·최인기·한광원·허태열 의원 발의)	15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4.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정부 제출)	17
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김동철·문학진·이인영·염동연·지병문·양형일·안병엽·배기선·윤원호·김형주·김태홍·최철국·구논회 의원 발의)	17
2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기·임채정·유재건·복기왕·김기석·신기남·한광원·심재덕·노영민·정장선·김태년 의원 발의)	17
27.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발의)(장경수 의원 외 143인 발의)	19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9
31.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정부 제출)	20
32.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21
3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2
34.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35.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23
3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37.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38.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 5분자유발언	26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 제5항, 제7항~제23항, 제26항 및 제27항, 제29항 및 제30항에 대하여 그 상정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주승용·이시중·양형일·이정일·이은영·이상열·우제창·안병엽·김선미·양승조·정성호 의원 발의)

2. 범죄피해자보호법안(정부 제출)

3. 檢察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범죄피해자보호법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남 광양·구례 출신 우윤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증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청사 방어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대라는 명칭의 조직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법원 청사 내에서의 구체적이고도 급박한 위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명칭을 “법원경비관리대”로 수정하였고,

둘째,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 청사 내에서 긴급한 위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이 위원회는 범죄피해를 연구한 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사 신모델 시행 및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내실 있는 재판과 통합도산법 관련 재판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 정원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470명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검사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증원요인 및 감원 요인을 면밀히 분석·심사한 결과 총 220인을 증원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되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4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 부칙을 개정하여 예전의 경우와 같이 매년 40인~50인으로 증원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심사보고서

檢事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各級法院判事等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1인, 기권 8인으로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8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재홍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건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는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 실태 파악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명을 한글화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기권 6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
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3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박승환**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금정출신 박승환 의원입니다.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일 본 의원을 대표로 한 항만 노무의 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됨을 계기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정부로부터, 그리고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배일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 또는 제출되어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끝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가지 자구수정을 거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최종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한 항만 인력에 대해서는 개편 전에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사이의 근로자 공급 계약에 의해

서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항만시설 임대계약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보장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으로 일시에 대규모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함으로써 인해서 준비된 퇴직 총당금이 필요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조기 퇴직하는 항만 인력을 위해서 정부가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 및 한나라당 의총에서 제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항만 인력 공급 체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는 본 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방향대로 심사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코자 해서 나왔습니다.

이 항만산업이 우리 전체 산업, 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7%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엇그저께 5000억 달러 무역고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에 항만물류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게 물류 체계의 일대 개편은 누구도 부정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편이 될 때에는 제대로 된 개편

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과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지금 제출된 대안과 다른 법안을 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항만 노무 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국가 물류 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편 체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연간 이익은 겨우 480억에 불과합니다. 왜 ‘겨우’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물류산업이 하루만 멈추어도 여기에 손실되는 비용이 1조 700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항운노조가 노무 체계를 공급 독점해 왔던 폐단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61년도에 조직된 항운노조가 크고 작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왔고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왔다는 것은 공으로 인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과 480억 달러의 연간 이익 이것도 노동자의 40%를, 지금 현재 인력의 40%를 줄여서 그 비용 절감 효과가 48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항만물류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의 개혁 방식을 취하겠다는 게 대안으로 제출된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말고 항운노조가 노무 체계 공급 개편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항만의 파동성에도 대비하고 외국의 선례에도 맞는 노무 체계 개편안을 냈던 것입니다.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테르담 항구 같은 경우는 상용직이 90%입니다. 일용직이 10%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은 상용직이 52%, 비정규직이 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 숫자가 현재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놨느냐 하면 하역업주한테 맡겨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어디 가서 보장받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 안에서 부랴부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답시고 낸 안이 퇴직금 안입니

다. 노동자가 근무하면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이 법안이 없어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퇴직금이 생색인 것처럼, 지원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퇴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 하역업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을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항만사업을 하는 사업주한테 정부 돈을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놓아 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서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상에도, 내용상 지적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내용상도 문제지만 이 법은 절차적으로 대단한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8일, 엇그저께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일에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3일 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긴급결의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9조에 보면 15일이 경과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긴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를 찾아 봐도 이 법안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사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올린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에 나왔던,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대외비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항만노무체계의 개편 관련 항운노조 동향 및 향후대책’ 해 가지고요, 즉 설명을 하면서 ‘관계부처 협조사항’ 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국정원, 경찰청)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참여정부가 정말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노무 체계를 개편하는데 국정원과 경찰청까지 도입해야 될 정도로 취약한 내용이라면 저는 이 법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 노동조합에는 지배 개입이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의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부는, 물론 노동조합을 잘 모르는,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운노조연맹 집행부의 입지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연맹위원장(최봉홍)의 영향력을 통해서 노조의 집단적인 반발이나 지역 간의 연계한 투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 “당분간은……”, 당분간입니다. “연맹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 조정과 대화 창구 유지가 필요”, 이것이 노조의 지배 개입이 아니고 됩니까?

또 이 외에도 이 문건에는 지역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확산시킬 것 등 이 정부가, 소위 민주절차인 정부가 취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자고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은 국민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개혁이 있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보고 참으라, 이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박된 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에 뜬 배가, 움직이는 배를 수리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이랬습니다.

지금 항운노조 2만 8000명 조합원들은 99.6%라는, 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파업투쟁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물동량이 멈추면 1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아까 공청회를 두 차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청회에 항운노조는 반대 토론을 했었고 그 반대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엇그저께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700여 명의 전국에 있는 항운노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운노조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쥐고 있던 노무공급권을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 왔던 공적은 인정하고 이후의 파동성도 대비하면서 산업화에 합리적인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이것이 항운노조의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인도나 아니면 호주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무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항운노조가 공급하던 노무체계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정부 주장대로 이 법안이 개혁을 담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급한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국회법 제114조의2에 있는 ‘양심’을 걸고 반대에 표를 찍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항만 노무 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찬성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7대 국회 들어와서 바다 관련 산업이 이만큼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감개무량한 실정입니다.

헌정사 57년 만에 국회에는 바다포럼이라는 국회의원의 연구단체가 생겼고 바다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일도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항만 노무자들이 대단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단계에서 바다 관련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외화 가득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8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만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의 교통세 투자의 거의 20% 상당을 항만의 건설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로부터는 1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참여정부에서도 겨우 10%로 이제 올라온 단계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즉 우리는 중국이나 이웃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육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타의 정치적 이유와 사회 문제들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항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적게 하고 말았던 것이 지금까지 논의되는 투 포트 시스템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물동량 면으로는 95% 이상을 바다라는 항만을 통해서 수출입하고 있고, 금액 면으로 친다면 90% 이상이 됩니다. 이 많은 물동량, 우리가 대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곤란한 것이 우리의 항만산업이고 해운산업이면서 바다 관련 산업의 육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법률안은 진즉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가지고 지난 임시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서둘렀던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좀더 합의를 하자고 해서 늦추어졌다가 그 뒤로 김재원 의원의 개정법률안, 조금 전에 반대 토론을 하셨던 배일도 의원님의 법률안, 또 정부안이 나와서 4개의 법률안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박승환 의원님의 법률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던 것과 합치면 2회의 공청회를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여야 간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의견의 접근을 보아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용화 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항운노조가 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행 항만 노무 공급 방식이 과거 인력 중심 하역 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화물이 규격화되고 하역작업이 급격히 기계화·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항만 물류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름철 하계 피서지로 바닷가를 찾을 때 가장 크게 의아심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항만에서 자동 물류비라는 것을 받는 것이 요즘 항운노조의 행태였습니다. 일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동 물류비를 아시나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자동 물류비라는, 자동 화물비라는 비용까지 지불하고 말 정도로 항만의 노무 공급 체제가 정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클로즈드 숏 체제는 금년 초에 문제가 됐던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은 상용화되는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정부법안은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 임금 수준 등 상용화 전의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항만 환경은 급격히 변화 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이 되기 위해 대규모 항만을 개발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화물을 대량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항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의 경쟁 항만들은 이미 상용화 체제를 통해 탄력적인 노무 공급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항만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만시설 개발, 배후단지 개발 및 외국 물류기업 유치,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항만에서의 노무 공급 체제 개편임을 강력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 노무 공급 체제 개편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가 되기 위

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번 법안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고민과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이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셔서 본 법안이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41인, 기권 14인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8.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우제창·채수찬·지병문·김종률·김혁규·정갑윤·김태홍·이시중·이계안·이목희·김재홍·한병도·최인기·김명주·서혜석 의원 발의)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최철국·강기정·최규성·최인기·유선호·이정일·우윤근·원혜영·제종길·지병문·김태년·염동연·유승희·문학진·주승용·박상돈·김동철·김교홍·배기선·양형일·김영주·박순자·김덕규·김희선 의원 발의)

10.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김혁규·우제창·김명주·엄호성·김태홍·박승환·박상돈·김양수·이영호·고조홍·최인기·심재엽·김재원·최규성·이원영·채수찬·김종률·이시중·신학용·김영춘·심재철·박재완·이목희·노현송·신기남·이혜훈·이근식·임종석·이광철·이상경·김성곤 의원 발의)

11.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4시5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항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교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김교홍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입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혜훈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을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자본재의 도입, 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시 절차가 불명확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용조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혁신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되어 있는 품질인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요건을 명확화, 구체화하고 사전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 의무 규정 및 해외 투자 요건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준수 여부를 검사 요건에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 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기반시설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 업자와 무역 유관 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 문서의 중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인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무역업자와 무역 유관 기관이 무역 절차에서 반복하여 유통되는 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등의 무역문서를 전자문서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반복 제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홍미영·강혜숙·강창일·최규성·한병도·최철국·이원영·정성호·원혜영·염동연·김동철·서갑원·양형일·지병문·오영식·박기춘·김교홍·강기정·김태년·김덕규·김희선 의원 발의)

14.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안상수·최인기·박승환·윤건영·서병수·김재경·정두언·박진·박찬숙·최경환·오제세·박종근·박재완 의원 발의)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0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김기현 산업자원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둘째, 재제조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제조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제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불만의 해소를 위하여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실시 및 재제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내 환경경영체제인증 시장의 급격한 확대 및 부실 인증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영리법인인 사업 시행자에게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공유 재산 무상 임대애 따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KS 규격표시 제품의 품질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통지제도 및 증표제시 의무 도입 등을 통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건립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유통발전심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동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체계가 맞지 않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고, 대규모 점포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노영민·김정훈·김종률·채수찬·최인기·최규성·김양수·김명주·이시중·이목희·이계안·김재원·정갑윤·이해봉·박승환·김석준 의원 발의)

18.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이해봉·심재철·황우여·엄호성·김영춘·정성호·김재홍·이근식·이시중·박재완·안상수 의원 발의)

19.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6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한병도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한병도 의원입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열 의원과 이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판매업자 등이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표 여부가 달라 발생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간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자 및 위법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안전 인증대상 사무소·사업장·점포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전기용품 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검사·질문의 일시 이유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질문계획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시에 증표제시뿐만 아니라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의 교부도 규정하는 일반 예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탄관련 사업체의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조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사유 내용을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의 보완과 일부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추진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관 중 공공성이 강한 일부 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1.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2.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명주·김영춘·김태년·김태홍·노현송·박재완·서재관·서병수·신계륜·신학용·심재덕·심재철·엄호성·우제창·이상경·이시중·이원영·이해봉·조경태·최인기·한광원·허태열 의원 발의)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규성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 공사에 있어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감리업자들은 공사감리 용역의 완료 시에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자의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경영 실태 조사 시에 필

요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조사·검사의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시에 증표 제시뿐만 아니라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의 교부도 규정하는 일반적 예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인증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 감시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해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공산품 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회)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법안(정부 제출)

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김동철·문학진·이인영·염동연·지병문·양형일·안병엽·배기선·윤원호·김형주·김태홍·최철국·구논희 의원 발의)

2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기·임채정·유재건·복기왕·김기석·신기남·한광원·심재덕·노영민·정장선·김태년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4항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의사일정 제26항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병호 인천 부평갑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에서 긴급복지지원법안으로 변경하고 위기상황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하였으며,

둘째, 긴급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연장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으로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24.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비추어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에 상근인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재단이 수행하는 북한, 개발도상국,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업무중복 방지와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계 고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재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 법과 재단의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의 중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서류 보존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처방전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와의 균형과 약국의 처방전 보존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보존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서류 보존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심사보고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01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4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기정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인기 의원과 조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고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는 2007년 1월 1일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기정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점이고, 더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역시 그 시행 시기는 2007년 1월 1일로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발의)
(장경수 의원 외 143인 발의)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5시4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경수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사업의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액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액 급증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 서 공급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 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고,

둘째, 분양 가격의 공시 항목을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 매입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넷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의 설치 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 설치 기구로 변경하고,

여섯째,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3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14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부 제출)

(15시5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1항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장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기금 계획 변경안은 무주택 서민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융자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중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

자금을 1조 2000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 재원에 대해서 기금 자체의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전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폭증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 가족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 기금 대출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출되므로 가수요나 투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15시5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2항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최성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입니다.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명으로 구성된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둘째, 국군의료부대의 임무는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요원에 대한 의료활동 및 위생 지원 활동이며,

셋째, 국군의료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 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는 것입니다.

그간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우리 국군의료부대는 성실한 근무 자세와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갈구하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우리 파견 요원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사례도 없이 파견 요원의 안전 문제 등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11월 29일 256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3인, 반대 8인, 기권 3인
으로서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
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15시5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29일 제256회 국회 제13차 통일외
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세 철폐 계획에 따라 상대 측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협정 체결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
리면, 현재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무관세 수
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도의 경우 대
싱가포르 수입액 44억 6000만 달러 중 무관세 수
입 비중이 73.7%에 이르는 등 무관세 비중이 상
당히 높아 사실상 상품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크
지 않으며 우리 측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의 경우
싱가포르 GDP에서 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고 싱가포르는 소규모 도시국가로서
쌀 사과 배 마늘 등 우리의 주요 농산물이 전혀
생산되지 않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국내 농수산
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
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인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
업의 유망 투자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선

진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
다.

한편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 제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
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해외 판로가 확보되어 남북 경제협력 사
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
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1.6%에 상당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장 10년 내에 철폐하
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쌀 사과 배 등 8.4%에
상당하는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싱
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둘째,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
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우리나라를 거
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
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양국은 내국민 대
우, 투명성 등을 상호 보장하고 입찰절차 등에
있어서 WTO 정부 조달 협정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면서도 중앙정부기관 물품 및 서비스 분야
조달과 관련하여는 현행 13만 SDR에서 10만
SDR로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개방 폭을
넓혔습니다.

넷째, 양국이 서로 다른 표준화 절차를 사용함
으로써 무역에 장애 요인이 되는 기술장벽을 제
거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용품 및 통신기기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정부 간 상호인
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7.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시0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한명숙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국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4건의 동의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 하고, 라오스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 이윤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하면서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안의 서명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대체되어 부과되는 조세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사업 이윤은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 이윤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당해 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며,

셋째, 건축 등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 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사이에 민간 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양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900만 달러 규모의 한국·이스라엘 산

업연구개발기금을 설립하고,

둘째, 비영리 조직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 설립하여 기금 및 기금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양국은 긴밀하고 정기적인 상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산업연구개발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중 어느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 기업의 사회보장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과 프랑스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3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다시 36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 대상자가 타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벨기에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60월 이내의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셋째,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대상자가 타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간 파견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료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점과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오공화국은 우리에게 라오스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가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지났습니다.

전광판 사고로 인해서 구제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도 오늘 좀 피로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동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장치가 고장 나면 기립투표를 하도록 국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6시21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정갑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도 신규 화차의 제작설명서를 공고하면서 그동안 국내 제작은 물론 사용 실적도 전혀 없는 미국산 부품을 설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품의 경우 이미 특정 업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부품 선정을 위한 해외 출장에 수입업체 관계자와 부품심의위원이 발주 담당자와 동행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전형적인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혈세 낭비는 물론 철도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심의를 다름 아닌 문제를 일으킨 발주 부서, 발주 담당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6시27분)

시속 350km/h의 고속열차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철도기술 수준에서 고작 화차부품 몇 개 때문에 100년 철도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몇몇 인사의 빼놓아진 욕심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몰락을 모른 채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전환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야말로 그동안 철도가 앓아 오던 고질병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사업 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철도 경영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정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건설교통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정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기립투표가 건강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말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규제특위 활동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특위에서 만든 48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규제특위가 법안 제안권이 없어 특위 소속 위원들의 개별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까라는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접수한 48개 법안 중 처리 완료된 법안은 4건이며 남은 44개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11건 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규제특위를 만든 것은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이 제3의 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고 일본의 유명한 5개 반도체 회사가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치열한 세계 기업들의 경쟁을 보면서 사회 각 분야의 규제를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규제특위를 만든 이유도 규제의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국회에서 규제를 없애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각종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만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서 민생 경제 희생과 국가 경제 발전에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도 분할법 합헌 판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도 이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제가 임시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수도 이전 추진을 정략적으로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총리께서는 당시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정략적인 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꼭 필요했던 일이라면 추진을 해야지 왜 그만두셨습니까?” 했더니 총리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참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의 수준이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이고 하니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수도 이전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사항이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백년대계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으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정부는 이 수도 이전을 수도 분할로 바꿔서 우회전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이 우회전술에 명칭하게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 분할법이 다시 제정된 것입니다.

여당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 분할법이 여야 합의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도 분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도 분할법이 이번에는 헌재에

서 합헌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수도 이전 위헌판결과 마찬가지로 수도 분할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분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해서 이 수도 분할이 법적인 정당성을 얻었지만 정책적인 타당성까지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도 이전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지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에 나오니까, “정부 부처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 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 관청가를 국회하고 청와대 사이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던 분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도 이전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것만 봐서 수도 이전 추진은 정략적이었던 게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망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결국 법적인 정당성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이 수도 분할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막대한 액수의 재원 문제도 그렇고 또 엄청난 행정적 낭비, 비효율 문제 끔찍합니다. 또 국토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됩니다. 또 투기 조장, 환경 파괴, 심지어는 공직자의 가정 파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이 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1년에 수도 이전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0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일본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수도 분할이 결국은 제2의 새만금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제2의 새만금이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충청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분할 문제가 제2의 새만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분은 바로 여성 농민이었습니다.

정리집회를 하려고 하는 그 농민들에게 경찰은 공원 반대편에서 공격을 위해서 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보령의 전용철 농민은 뇌손상과 기억상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쓰러질 당시 전용철 농민은 뺨뺨하게 온 사지가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패를 돌리며 승리의 환호를 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쌀 비준에 동의한 우리 모두는 민족 산업인 농업에 조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그 며칠 전 15일, 국회 앞에서는 대책 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농민들 다 죽는다고 반대하면서 농민대회를 하였습니다. 이미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에 우리 정부는 몽둥이와 방패 공격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민생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절규에 경찰은 항상 과잉 폭력으로 응답하였고 그 모든 것을 시위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폭력 진압의 와중에 40대의 농촌 총각 전용철 농민이 사망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경찰 측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과수 발표를 거두절미하고 왜곡하여서 술 마시고 넘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회의원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에 부상당하고 죽어 가는데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동료 의원들과 교섭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에 기초해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과잉 폭력 진압의 책임자들과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고 전용철님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 이영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염원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 지역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후 1년간 커다란 상실감 속에서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증병으로 더욱 힘든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 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의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면서 그 약속은 좌절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다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12부 4처 2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것이고 이와 함께 177개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분산·이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남은 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미래형 모범도시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정부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두 쪽으로 갈려 격렬하게 대치한 국민들 마음의 양금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이 2005년 4월 7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난 지금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또한 그러합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사업은 다음달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고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만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 작업도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힘을 합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성공시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이룩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김학송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이광철	이규택	이낙연	이명규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장향숙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석현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반대 의원(4인)

권영길 김애실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1인)

최경환

(전여옥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5인, 기권 의원 1인임)

○범죄피해자보호법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영호
이석현 이성구 이시종 이인기
이용희 이원영 이재웅 이재창
이인영 이재오 이종구 이진구
이정일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이한구 이해봉 임태희 임해규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영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檢事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반대 의원(21인)

권영길 김석준 김애실 김용갑
 박세환 박찬숙 심재덕 안홍준
 유승민 윤건영 이규택 이상배
 이영순 이재웅 이종구 이혜훈
 임해규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순영

기권 의원(8인)

김기현 박형준 이계안 이군현
 이한구 정희수 한광원 황우여

○各級法院判事等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희정 남경필 김혁규 김희선
 노현송 류근찬 노영민 노웅래
 문학진 문희 문병호 문석호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박종근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한길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이석현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신계륜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장향숙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민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반대 의원(6인)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김용갑	박세환	박찬숙	이상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진영	최경환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기권 의원(7인)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김기현	김애실	김정권	박형준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이혜훈	정희수	한광원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3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6인)

김정권 김정부 신상진 유기준
 이강두 이한구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정문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41인)

고경화 고진화 권영길 김기현
 김무성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재원 김재윤
 김태환 문희 박성범 박순자
 박찬숙 배일도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안명옥 안홍준 윤건영
 윤두환 이계진 이병석 이상득
 이상열 이영순 이재오 임해규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청래
 정형근 천영세 최병국 최연희
 허천

기권 의원(14인)

강창일 고흥길 권경석 김성조
 김정부 박형준 심재철 안경률
 엄호성 유승민 이경재 이윤성
 이종구 이해봉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중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박형준

기권 의원(1인)

김광원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홍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양수 이재웅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홍미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홍미영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이 정 일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신 계 룬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이 상 경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황 우 여				이 상 열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승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용 희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인 기	이 정 일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재 창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인 배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임 해 규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장 윤 석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갑 윤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병 국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의 화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정 청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조 성 태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주 승 용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채 수 찬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규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최 용 규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한 광 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허 태 열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심 상 정 이 영 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 관한法律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룬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재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용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선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안경률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상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심 재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경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속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속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정	남 경 필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노 영 민	노 용 래	노 현 송	류 근 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박 찬 석	박 찬 속	박 형 준	박 회 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이 정 일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신 계 룬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속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제 종 길	조 배 속	조 성 래	조 성 태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이 경 속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반대 의원(1인)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혜 훈				이 정 일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속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배 속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4인)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기권 의원(3인)			
강길부	장윤석	정장선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4인)			
김석준	김양수	유승민	이계경
기권 의원(4인)			
고조홍	김정부	송영선	홍재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옹래 김노현 주노송 회찬호 영민호
 류근찬 김문병 호문석 호 단병호
 문희상 김문희 상문석 호 문학진
 박기춘 김박명 광문병 두 박근혜
 박세환 김박순 자박승 환 박영선
 박재완 김박찬 석박찬 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재창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진구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임인배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장경수
 임채정 임태희 장향숙 전병현
 장영달 장윤석 장항숙 정두언
 전여옥 정갑윤 정봉주 정성호
 정문헌 정병국 정장선 정중복
 정세균 정의화 정형근 제종길
 정진섭 정청래 조성태 조일현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조정식 주진영 채수찬 천영세
 진수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구식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천 황우여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재오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부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희정
 노영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문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재웅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임인배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6인)

김정권	박세환	박찬숙	박형준
송영선	이혜훈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기권 의원(3인)

박근혜 이인기 이혜훈
(신상진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3인, 기권 의원 3인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석준 김애실 김영춘 김재원 김정훈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명규 이상득 이석현 이시종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혜봉 임채정 장복심 전병헌 정두언 정성호 정종복 조배숙 주성영 진규연

김무성 김선미 김양수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오 노웅래 문석호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박형준 변재일 송영선 신학용 안경률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선호 유정복 윤원호 이경재 이광철 이목희 이성구 이영순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혜훈 장영달 전여옥 정문헌 정세균 정진섭 조성래 주승수 채병용

김병호 김성곤 김영덕 김우남 김정권 김춘진 김학송 김형주 노현송 문학진 박근혜 박상돈 박재완 박희태 서상기 신계륜 심재덕 안민석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승민 이강두 이계경 이근식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영호 이은영 이재웅 이주호 이화영 임해규 장윤석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청래 조성태 지병문 최영성 최재성

김부겸 김성조 김영주 김원웅 김정부 김충환 김혁규 김희정 노회찬 박기춘 박순자 박찬석 배기선 신병렬 신국환 심재엽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원희룡 유인태 이강래 이계안 이낙연 이상경 이상열 이승희 이인기 이정일 이진구 임인배 장경수 장향숙 정덕구 정봉주 정장선 제종길 진수희 최순영 최재천

최철국 허천 홍창선
한광원 허태열 황우여
한병도 홍미영
한선교 홍재형

기권 의원(1인)

김원기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정 강재섭 고조흥 구노회 권오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성조 김영숙 김우남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주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영선 박형준 변재일 송영선 신학용 안경률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선호 유정복 이경재 이광철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영호 이은영 이재웅 이주호 이화영 임해규 장윤석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청래 조성태 지병문 최영성 최재천

강길부 강창일 고진화 권경석 권철현 김낙순 김명주 김석준 김애실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춘진 김학송 김희정 노회찬 박근혜 박상돈 박재완 박희태 서상기 신계륜 심재덕 안민석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승민 이강두 이계경 이낙연 이상경 이상열 이승희 이인기 이정일 이진구 임인배 장경수 장향숙 정덕구 정봉주 정장선 제종길 진수희 최순영 최재천

강봉균 강혜숙 고홍길 권선택 김교홍 김덕규 김무성 김선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정부 김충환 김현미 노영민 류근찬 문희상 박기춘 박순자 박찬석 배기선 신병렬 신국환 심재엽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원희룡 유인태 이강래 이계안 이명규 이상득 이석현 이시종

강성종 고경화 광성문 권영세 김기현 김덕룡 김병호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정훈 김태년 김형오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염동연 우원식 유기준 유재건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목희 이상민 이성구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운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최구식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권경석 박형준 이용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최규성 최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순영 최규식 최병국
 최재성 최재천 최철회 최용규
 최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재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윤 김정권 김태년 김태홍
 김종률 김춘진 김혁규 김현미
 김태환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김형오 김현송 노회찬 류근찬
 노응래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병호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문희상 민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명광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오영식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우윤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인태
 유선호 유승민 유두환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북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연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흥 미 영 흥 재 형
기권 의원(1인)
 송 영 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희 태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북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연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흥 미 영 흥 재 형
반대 의원(7인)

고 조 흥 광 성 문 김 기 현 김 정 권
 박 찬 숙 박 형 준 유 승 민

기권 의원(10인)

권 경 석 배 기 선 송 영 선 안 흥 준
 우 제 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상 배
 이 해 훈 최 철 국
 (박순자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202인, 기권 의원 10인임)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진화, 고권선, 고권철, 김낙순, 김명주, 김석준, 김애실,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춘진, 김한길, 김형주, 노현송,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순자, 박찬석, 배기선, 서상기, 신계륜, 심재엽, 안상수,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선호, 유필우, 이강두, 이계경, 이근식, 이방호, 이상배, 이시종, 이원영, 이인영, 이정일, 이진구, 임인배, 임해규, 장윤갑, 정병국, 정의화

고홍길, 김교홍, 김덕규, 김무성, 김선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정훈, 김태년, 김혁규, 김희정, 노회찬, 문석호, 민병두,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서혜석, 신상진, 심재철,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유승민,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낙연, 이병석, 이영순, 이윤성, 이재오, 이종걸, 임종석, 장향숙, 정봉장

곽성영, 김기현, 김덕룡, 김병호,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종률, 김태홍, 김현미,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상돈, 박영선, 박형준, 변재일, 선병렬, 신학용,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우원식, 유원희, 유인태,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명규, 이상경, 이성구, 이영호, 이은영, 이재웅, 이종구, 임채훈, 임재정, 정병현, 정두언, 정성호, 정종복

구노회, 권오성, 김동철, 김부겸, 김성조, 김영숙, 김우남, 김재윤, 김종인, 김태환, 김형오, 노웅래, 맹희규, 문희춘, 박세환, 박재완, 박희태, 서갑원, 손봉숙,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정복, 윤원호, 이경재, 이광철, 이목희, 이상민, 이승희, 이용희,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이화영, 임태희, 장영달, 전여옥, 정문현, 정세균, 정진섭

정청래, 조배숙, 주성영, 진영, 최규성, 최순영, 최재천, 한선교, 홍재형, 정형근, 조성래, 주승용, 채수찬, 최규식, 최연희, 최철국, 허천선, 홍창선, 정화원, 조성태, 지병문, 천영세, 최병국, 최용규, 한광원, 현애자, 황우여, 제종길, 조정식, 진수희, 최구식, 최성, 최재성, 한병도, 홍미영, 기권 의원(2인), 김정부, 송영선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정, 강창일, 고진화, 권영세, 김기현, 김덕룡, 김부겸, 김성조, 김영숙, 김우남, 김재윤, 김종인, 김태환, 김현미,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상돈, 박영선, 박형준, 서갑원, 선병렬, 신상진, 심재철, 안택수, 엄호성, 우상호, 유원희, 유인태, 강길부, 강혜숙, 고홍길, 권오성, 김낙성, 김동철, 김석준, 김애실, 김영주, 김원기, 김정권, 김춘진, 김학송, 김형오, 노웅래, 맹희규, 문희상, 박기춘, 박세환, 박재완, 박희태, 서병수, 손봉숙, 신학용,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정복, 강봉균, 강경화, 구노회, 권철현, 김낙순, 김문수, 김선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정훈,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노현송,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순자, 박찬석, 배기선, 서상기, 송영선,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선호, 유필우, 강성종, 고조홍, 권선택, 김교홍, 김덕규, 김병호,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종률, 김태홍, 김혁규, 김희정, 노회찬, 문석호, 민병두, 박병석, 박승환, 박찬숙, 변재일, 서혜석, 신계륜, 심재엽, 안병엽,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승민, 윤건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곽 성 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김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박 명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룡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구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최 구 식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재 천 최 재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박 세 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희 태
배 기 선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룡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안 경 룡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희 룡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형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13인)

김 기 현	김 석 준	김 종 룡	박 세 환
박 찬 숙	박 형 준	유 기 준	유 승 민
윤 건 영	이 계 경	이 상 민	이 혜 훈
정 병 국			

기권 의원(1인)

심 재 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6인)

김애실	윤건영	이계경	이종구
전여옥	주승용		

기권 의원(8인)

권철현	박근혜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심재철	유승민	정화원

(이혜훈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5인, 반대 의원 6인임)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배 속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송영선 이종구 이해훈 정문헌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혜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배속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8인)

김기현 노회찬 안홍준 이영순
 이재오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3인)

김양수 박찬석 이진구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5인)

노회찬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2인)

신중식 최연희

(김재윤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2인임)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희룡 유기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송 영 선	신 계 룬	신 상 진	신 중 식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안 경 룰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형 근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유 원 희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유 건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기 권 의 원 (2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노 회 찬	우 제 창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
동의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기권 의원(3인)

강성종 박세환 전여옥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송영선 안홍준 한명숙

○출석 의원(27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중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현 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출장 의원(3인)
 김명자 정의용 황진하
○청가 의원(13인)
 김진표 김학원 김효석 나경원
 신기남 유승희 유시민 윤호중
 이해찬 임종인 정동채 정몽준
 정진석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천정배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입법차장 상원종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통일외교통상	전여옥	한나라당	2005. 11. 24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학원	통일외교통상	과학기술정보통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05. 11. 30
정몽준	과학기술정보통신	통일외교통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05. 11. 30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안상수	이주호	한나라당	2005. 11. 25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	서병수	김석준	한나라당	2005. 11. 28

○의안 제출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賃貸住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박찬숙·이인기·엄호성·박상돈·김재원·정성호·박세환·신상진·심재덕·권경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船員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배일도·유정복·김영덕·정문헌·안택수·임해규·최경환·김한길·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박찬숙·정진섭·엄호성·안상수·박형준·김재원·정성호·이계경·황우여·심재덕 의원 발의)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재경·김태홍·김효석·노현송·문학

진·민병두·백원우·서혜석·신계륜·심재덕·안상수·유선호·이목희·조배숙·정봉주·정성호·지병문·최재성·한명숙·홍미영 의원 발의)

11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태홍·노현송·민병두·백원우·서혜석·신계륜·안상수·이목희·정봉주·정성호·지병문·조배숙·홍미영 의원 발의)

11월 24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5. 11. 23 이광재·오제세·정문헌·노현송·유시민·심재엽·박세환·정청래·김재윤·민병두·김태년·홍미영·이계진·노웅래·조일현·이은영·최철국·이낙연·백원우·김태홍·최규성·한병도·이화영·서갑원·허천·고진화·최연희 의원 발의)

1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 2005. 11. 23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4 김영선·엄호성·고조홍·이인기·한선교·김효석·공성진·김선미·박재완·정병국·배일도·정성호·김재경·김재원 의원 발의)

11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나무의 나라나무(國木) 지정을 위한 결의안

(2005. 11. 24 심재덕·강창일·강혜숙·김명주·김재경·김종률·김태홍·김한길·노웅래·노현송·박상돈·신중식·신학용·안상수·양승조·엄호성·이계안·이인기·전병현·정갑윤·정병국·정진석·조일현·채수찬·최규식·한광원 의원 발의)

地方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4 조성래·강창일·김태홍·조경태·엄호성·우제항·박상돈·김태년·최규

식·홍미영·양형일·윤원호·장향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조성래·강창일·정성호·고조흥·엄호성·우제항·이은영·이인기·최규식·홍미영·양형일·윤원호·장향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김효석·김종률·김태년·김태홍·신중식·신학용·이근식·이성권·엄호성·오제세 의원 발의)

11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10건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11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射倂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독서진흥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정성호·제종길·박상돈·조배숙·신학용·심재덕·홍미영·양승조·선병렬·김태년 의원 발의)

11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이재웅·이계진·박찬숙·이재오·김충환·김정부·박계동·최구식·정종복·박형준·손봉숙·진수희·김재윤·류근찬 의원 발의)

11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박세환·유기준·정문헌·조성태·이인기·안상수·김재원·박찬숙·황우여·신국환·박상돈·윤건영·정성호 의원 발의)

11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고경화·박재완·안상수·엄호성·고조흥·심재철·이인기·이성권·김재원·황우여·김문수·신상진 의원 발의)

保健醫療技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고경화·박재완·안상수·엄호성·고조흥·심재철·이인기·이성권·황우여·김문수·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정의화·고조흥·김재원·정문헌·엄호성·권경석·김애실·김무성·이계진·김병호·박찬숙·신상진·진영·김석준·이계경·최병국·김문수·문희·홍준표·박성범·김희정·곽성문·이경제·양형일·우제항·정진섭 의원 발의)

11월 2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정의화·고조흥·김재원·정문헌·엄호성·권경석·김애실·김무성·이계진·김병호·박찬숙·이종구·진영·김석준·이계경·최병국·김문수·문희·홍준표·박성범·김희정·곽성문·이경제·양형일·우제항·정진섭·신상진 의원 발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정의화·고조흥·김재원·정문헌·엄호성·권경석·김애실·김무성·이계진·김병호·윤건영·이종구·진영·김석준·이계경·김문수·문희·박성범·안명옥·이경제·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이원영·안상수·이영호·유기준·서혜석·홍미영·정성호·강혜숙·이인기·박찬숙·김태홍·강창일·이은영·이해봉 의원 발의)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法官懲戒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선병렬·장영달·정성호·민병두·우원식·이경숙·권선택·노회찬·강기정·양승조·김혁규·안민석·구논회·김태년·최철국·홍창선·변재일·최규성·김진·제종길·장복심 의원 발의)

檢事懲戒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5 선병렬·장영달·정성호·민병두·우원식·이경숙·이원영·권선택·노회찬·강기정·양승조·김혁규·안민석·구논회·김태년·최철국·홍창선·변재일·최규성·제종길·장복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박재완·이계경·김재원·이주호·안병엽·박찬숙·유승민·윤건영·나경원·심재철 의원 발의)

11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염동연·김낙순·김영춘·김재홍·김한길·박명광·변재일·서재관·선병렬·심재덕·안민석·양승조·양형일·엄호성·우제창·이계안·이근식·이영호·이해봉·장복심·정성호·조성래 의원 발의)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臟器等移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맹형규 · 김태홍 · 전병헌 · 서병수 · 이계경 · 신학용 · 이인기 · 전재희 · 안상수 · 김충환 · 엄호성 · 조경태 · 박재완 · 이주호 · 고조홍 · 나경원 · 배기선 · 정봉주 · 이근식 의원 발의)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최규식 · 강창일 · 김재홍 · 홍미영 · 조성래 · 장복심 · 박기춘 · 양형일 · 지병문 · 이재창 · 원혜영 · 서병수 · 김무성 · 고흥길 · 이영순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최규식 · 이종걸 · 강창일 · 김재홍 · 홍미영 · 조성래 · 장복심 · 박기춘 · 정진석 · 양형일 · 지병문 · 이인기 · 이재창 · 원혜영 · 정진섭 · 심재덕 · 서병수 · 김무성 · 고흥길 · 이영순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고흥길 · 고경화 · 고조홍 · 권영세 · 권오을 · 김영선 · 김재원 · 김정훈 · 황진하 · 김태환 · 박성범 · 서병수 · 신상진 · 안택수 · 엄호성 · 유기준 · 유정복 · 이규택 · 이상배 · 이성권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창 · 이진구 · 이혜훈 · 임인배 · 임태희 · 정갑윤 · 정병국 · 정성호 · 주호영 · 허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9 김영덕 · 김기현 · 이인기 · 심재철 · 김용갑 · 한광원 · 박재완 · 김광원 · 이방호 · 조일현 · 이상배 · 김명주 · 김재원 · 김재경 · 권경석 · 안상수 · 신중식 · 이영호 · 김낙성 · 안명옥 · 김우남 · 김충환 · 강기갑 · 박승환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9 김정권 · 이계경 · 유기준 · 김재경 · 김재원 · 안상수 · 정병국 · 엄호성 · 조성래 · 고조홍 · 이인기 · 박상돈 · 정진섭 의원 발의)

의)

이상 2건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

(2005. 11. 29 정부 제출)

호도연금법안(유시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9 유시민 · 강기정 · 이기우 · 이목희 · 장향숙 · 안민석 · 문병호 · 강혜숙 · 임채정 · 김태년 · 유선호 · 강창일 · 제종길 · 노현송 · 김태홍 · 박상돈 · 이광철 · 정성호 · 안병엽 · 정봉주 · 서혜석 · 엄호성 · 유기홍 · 김형주 · 문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9 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11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쌀값인상 촉구결의안

(2005. 11. 30 최규성 · 홍문표 · 박세환 · 류근찬 · 문석호 · 정성호 · 지병문 · 오제세 · 김춘진 · 한병도 · 이방호 · 이인제 · 조배숙 · 김재윤 · 한광원 · 신학용 · 유기홍 · 광성문 · 이광철 · 이원영 · 우윤근 · 선병렬 · 이인영 · 장영달 · 김태홍 · 이호웅 · 유승희 · 이상민 · 유선호 · 임종인 · 이종걸 · 이상호 · 이목희 · 양승조 · 장향숙 · 강길부 · 이용희 · 서재관 · 강창일 · 정봉주 · 최철국 · 서갑원 · 배기선 · 김교홍 · 이규택 · 김재홍 · 이기우 · 강기갑 · 우원식 · 이경숙 · 김정권 · 김광원 · 이진구 · 신기남 · 허천 · 장윤석 · 권오을 의원 발의)

12월 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軍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송영선 · 고경화 · 고조홍 · 권경석 · 김문수 · 김재경 · 김재원 · 박상돈 · 박세환 · 박재완 · 배일도 · 서혜석 · 신국환 · 신상진 · 안상수 · 엄호성 · 우제창 · 유기준 · 이근

식·이인기·이진구·이해봉·이혜훈·전여옥·정희수·주성영·진수희·홍준표·황진하 의원 발의)

12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臟器等移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

(2005. 11. 30 박성범 의원 외 13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정화원·권철현·이해봉·남경필·이성권·김희정·박세환·나경원·이인기·엄호성·심재철·고경화 의원 발의)

葬事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애실·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문수·권경석·김양수·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정훈·문화·박세환·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강두·이계경·이계진·이상경·이인기·이혜훈·임해규·정종복·황우여 의원 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춘진·김태홍·황우여·이영호·강창일·박세환·고경화·박재완·박상돈·임해규·고조흥·강기정·심재덕·엄호성·서혜석·이근식·조성래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0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영숙·이진구·황진하·김석준·안명옥·임인배·박세환·배일도·곽성문·임해규·정화원·심재엽·김성조·김애실·박순자·김문수 의원 발의)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재홍·안민석·노웅래·민병두·김충환·강혜숙·권영길·최규성·최규식·김재윤·홍미영·손봉숙·강길부·이목희·이상열·박기춘·김춘진·김선미·김교홍·김영주·한병도 의원 발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재윤·강혜숙·김재홍·노웅

래·안민석·이재웅·정청래·강창일·김원웅·노현송·백원우·엄호성·이상경·이원영·이인기·이인영·이해봉·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김애실·권경석·권오을·김문수·김양수·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정훈·김충환·서상기·엄호성·이계경·이계진·이근식·이명규·이병석·이상경·이한구·이혜훈·임태희·임해규·정두연·정종복 의원 발의)

12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5. 11. 30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

(2005. 11. 30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5. 11. 3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5. 11. 30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5. 11. 30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各級法院判事등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5. 9. 30 우윤근·주승용·이시중·양형일·이정일·이은영·이상열·우제항·안병엽·김선미·양승조·정성호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법안

(2005. 8. 31 정부 제출)

檢事定員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5. 6. 1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05. 8. 24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2005. 9. 2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비준동의안

(2005. 9. 9 정부 제출)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손지열) 인사청문요청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손기식)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3건 2005. 11. 9 대법원장 제출)

(이상 3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이상 3건 11월 29일 대법원장에게 송부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5. 26 박찬숙 · 정봉주 · 김재원 · 이해봉 · 강혜숙 · 박재완 · 이상경 · 서병수 · 박세환 · 김재경 · 정병국 · 유정복 · 노현송 · 안홍준 · 정성호 · 강길부 · 심재철 · 이근식 · 안명옥 · 고조홍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박찬숙 · 유기준 · 김재원 · 박명광 · 엄호성 · 김재경 · 신상진 · 박세환 · 이해봉 · 정문헌 · 허천 · 노현송 · 주승용 · 유승희 · 황우여 · 안상수 · 손봉숙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5. 6. 18 강혜숙 · 황우여 · 안병엽 · 제종길 · 이원영 · 박찬석 · 이계경 · 박찬숙 · 이시종 · 배일도 · 박명광 · 유정복 · 이계진 · 유승희 · 안상수 · 김희선 · 이상경 · 신상진 · 이근식 · 천영세 · 이낙연 · 강창일 · 신기남 · 이윤성 · 이해봉 · 엄호성 · 염동연 · 김태홍 · 최재성 · 심재철 · 안민석 · 백원우 · 고조홍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5. 7. 28 강혜숙 · 신학용 · 강창일 · 김태홍 · 이상경 · 이해봉 · 서재관 · 정봉주 · 최인기 · 김기현 · 심재철 · 이낙연 · 조경태 · 이원영 · 이시종 · 이근식 · 김형주 · 안상수 · 심재덕 · 한광원 · 배일도 · 유승희 · 고진화 · 김재윤 · 김재홍 · 엄호성 · 오제세 · 노영민 · 정청래 · 황우여 · 서혜석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5. 8. 12 민병두 · 이인영 · 최규식 · 김재홍 · 김현미 · 장향숙 · 선병렬 · 한명숙 · 정봉주 · 박영선 · 이광철 · 신중식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6 이경숙 · 안민석 · 양승조 · 선병렬 · 우원식 · 박명광 · 양형일 · 윤원호 · 김태년 · 이근식 · 정청래 · 김영주 · 유인태 · 원혜영 · 임종인 · 문병호 · 박찬석 · 김재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박승환 · 박형준 · 김형오 · 박진 · 정문헌 · 김병호 · 안경률 · 송영선 · 임인배 · 홍문표 · 김재원 · 김영덕 · 김양수 · 이상배 ·

안홍준 · 이방호 · 허태열 · 서병수 · 고흥길 · 이인기 · 유정복 · 유기준 · 김정훈 · 김우남 · 조일현 · 조성래 · 김낙성 · 이영호 의원 발의)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김재원 · 김석준 · 김양수 · 김영덕 · 김충환 · 김태환 · 박종근 · 안명옥 · 안택수 · 이상배 · 이성구 · 정갑윤 · 한선교 · 허태열 의원 발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2005. 9. 9 정부 제출)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4 배일도 · 이승희 · 김영숙 · 박성범 · 고진화 · 고경화 · 박순자 · 정화원 · 정병국 · 서병수 · 이해봉 · 이계진 · 진영 · 이성권 · 김희정 · 이재오 · 박계동 · 김애실 · 정두연 · 김문수 · 유기준 · 이진구 · 고조홍 · 송영선 · 정희수 · 공성진 · 신상진 · 유승희 · 이인기 · 심재엽 · 단병호 · 최순영 · 이병석 · 주성영 · 남경필 · 엄호성 · 심상정 · 천영세 · 이재웅 · 박진 · 최병국 · 이영순 · 김영선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심재엽 · 노영민 · 김정훈 · 김종률 · 채수찬 · 최인기 · 최규성 · 김양수 · 김명주 · 이시종 · 이목희 · 이계안 · 김재원 · 정갑윤 · 이해봉 · 박승환 · 김석준 의원 발의)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5. 7. 22 우제창 · 김혁규 · 우제항 · 김명주 · 엄호성 · 김태홍 · 박승환 · 박상돈 · 김양수 · 이영호 · 고조홍 · 최인기 · 심재엽 · 김재원 · 최규성 · 이원영 · 채수찬 · 김종률 · 이시종 · 신학용 · 김영춘 · 심재철 · 박재완 · 이목희 · 노현송 · 신기남 · 이혜훈 · 이근식 · 임종석 · 이광철 · 이상경 · 김성곤 의원 발의)

外國人投資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05. 7. 26 최규성 · 우제창 · 채수찬 · 지병문 · 김종률 · 김혁규 · 정갑윤 · 김태홍 · 이시종 · 이계안 · 이목희 · 김재홍 · 한병도 · 최인기 · 김명주 · 서혜석 의원 발의)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7. 26 문학진 · 김명주 · 김영춘 · 김태년 · 김태홍 · 노현송 · 박재완 · 서재관 · 서병수 · 신계륜 · 신학용 · 심재덕 · 심재철 · 엄호성 · 우제창 · 이상경 · 이시종 · 이원영 · 이해봉 · 조경태 · 최인기 · 한광원 · 허태열 의원 발의)

産業標準化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나경원 · 안상수 · 최인기 · 박승환 · 윤건영 · 서병수 · 김재경 · 정두언 · 박진 · 박찬숙 · 최경환 · 오제세 · 박종근 · 박재완 의원 발의)

石炭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005. 9. 6 고진화 · 이해봉 · 심재철 · 황우여 · 엄호성 · 김영춘 · 정성호 · 김재홍 · 이근식 · 이시종 · 박재완 · 안상수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3 김태홍 · 최철국 · 강기정 · 최규성 · 최인기 · 유선호 · 이정일 · 우윤근 · 원혜영 · 제종길 · 지병문 · 김태년 · 엄동연 · 유승희 · 문학진 · 주승용 · 박상돈 · 김동철 · 김교홍 · 배기선 · 양형일 · 김영주 · 박순자 · 김덕규 · 김희선 의원 발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4 정부 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26 정부 제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김태홍 · 홍미영 · 강혜숙 · 강창일 · 최규성 · 한병도 · 최철국 · 이원영 · 정성호 · 원혜영 · 엄동연 · 김동철 · 서갑원 · 양형일 · 지병문 · 오영식 · 박기춘 · 김교홍 · 강기정 · 김태년 · 김덕규 · 김희선 의원 발의)

(이상 11건 수정하여 의결)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

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7. 21 이혜훈 · 정두언 · 김재원 · 최인기 · 엄호성 · 유기준 · 심재철 · 김정훈 · 이해봉 · 신상진 · 고조홍 · 안상수 의원 발의)

小企業 및 小商工人 지원을 위한 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발의)

(2005. 11. 1 김태홍 의원 외 143인 발의)

環境親和의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中 改正法律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4. 12. 30 오제세 · 박상돈 · 문학진 · 신학용 · 이호웅 · 김원웅 · 김춘진 · 서재관 · 김종률 · 최인기 의원 발의)

環境親和의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4 정부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이명규 · 김재원 · 심재철 · 권경석 · 광성문 · 안상수 · 김성조 · 정갑윤 · 이상득 · 김무성 · 임인배 · 배일도 · 고조홍 · 엄호성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4 이상열 · 김동철 · 김태년 · 한병도 · 최인기 · 이정일 · 김성곤 · 김효석 · 김기현 · 이윤성 · 손봉숙 · 최규성 · 최철국 · 이병석 의원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오제세 · 박재완 · 이원영 · 최인기 · 이해봉 · 안상수 · 엄호성 · 정성호 · 김재윤 · 박상돈 · 한광원 · 황우여 · 이재오 · 신학용 · 노현송 · 이근식 · 조일현 · 서재관 · 나경원 의원 발의)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6 정부 제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05. 7. 26 최규성 · 우제창 · 채수찬 · 지병문 · 김종률 · 김혁규 · 정갑윤 · 김태홍 · 이시종 · 이계안 · 이목희 · 김재홍 · 한병도 · 최인기 · 김명주 · 서혜석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6 정부 제출)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2005. 6. 9 정부 제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3 문병호 · 김동철 · 문학진 · 이인영 · 염동연 · 지병문 · 양형일 · 안병엽 · 배기선 · 윤원호 · 김형주 · 김태홍 · 최철국 · 구논회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증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1 정성호 · 이인기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김기석 · 신기남 · 한광원 · 심재덕 · 노영민 · 정장선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4. 6. 1 이인기 · 권오을 · 강재섭 · 황우여 · 김효석 · 엄호성 · 이상득 · 한화갑 · 박희태 · 이재오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4. 6. 7 이인기 · 권오을 · 강재섭 · 황우여 · 김효석 · 엄호성 · 이상득 · 이재오 · 정병국 · 맹형규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一部改正法律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

(2005. 4. 4 조일현 · 김영덕 · 김우남 · 김광원 · 한광원 · 서혜석 · 신중식 · 김태홍 · 우원식 · 오제세 · 김낙성 · 강혜숙 · 노영민 · 이계경 · 이상배 · 우윤근 · 황진하 · 이광재 · 노현송 · 김재원 · 박승환 · 이원영 · 이영호 · 홍문표 · 박세환 · 김명주 · 이시종 · 이광철 · 허천 · 안병엽 · 이계진 · 이방호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증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발의)

(2004. 11. 19 강기정 의원 외 14인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증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4. 11. 29 김춘진 · 강기정 · 이낙연 · 복기왕 · 신국환 · 이원영 · 안병엽 · 임종석 · 최용규 · 조배숙 · 오시덕 · 이근식 · 신기남 · 장향숙 · 황우여 · 김원웅 · 오제세 · 엄호성 · 이상락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발의)
(2005. 9. 28 장경수 의원 외 143인 발의)
(원안대로 의결)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5. 9. 2 김학송 · 박재완 · 서병수 · 임태희 · 한선교 · 이혜훈 · 최경환 · 주성영 · 김재경 · 김덕룡 · 황진하 · 허천 · 유기준 · 김정권 · 김영선 · 장윤석 · 권철현 · 김문수 · 송영선 의원 발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윤호중 의원 발의)
(2005. 10. 13 윤호중 의원 외 143인 발의)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노응래 의원 발의)
(2005. 10. 14 노응래 의원 외 34인 발의)
(이상 3건 대안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4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 11. 1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염동연 · 김낙순 · 김영춘 · 김재홍 · 김한길 · 박명광 · 변재일 · 서재관 · 선병렬 · 심재덕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우제창 · 이계경 · 이계안 · 이근식 · 이영호 · 이해봉 · 장복심 · 정성호 · 조성래 · 황우여 의원 발의)
11월 2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청원
(2005. 11. 25 경남 통영시 도천동 1022 월드비치타운 102-1101 김갑중 외 279인으로부터 김명주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28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14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김두연 외 49인으로부터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군휴가중 폭행사건 재조사에 관한 청원
(2005. 11. 28 충남 천안시 봉명동 209-13 진우 하이츠빌라 3동 202호 함석인으로부터 박

상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28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으로부터 선병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
(2005. 11. 28 전북 익산시 남중동 321-197 임윤철 외 3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29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1번지 덕수빌딩 501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고진광 외 1인으로부터 류근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국도46호선 배후령구간(신북~북산) 국도개량 공사 조기완공에 관한 청원
(2005. 6. 15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05 양구군의회 의원 이한웅 외 6인으로부터 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영남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에 관한 질문서
(2005. 11. 25 백원우 의원 제출)
철도공사의 유전의혹사업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서
(2005. 11. 25 권영세 의원 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관한 질문서(9건)
(이상 9건 2005. 11. 30 심재철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5. 11. 24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